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인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9월 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78호

군포도시공사 직인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(직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)제1항 “별표1”을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영 란 (3 9 0 - 7 6 1 8)

[별표 1]

직인의 종류

- 군포도시공사사장인
- 군포도시공사징수관인
- 군포도시공사경리관인
- 군포도시공사물품관리관인
- 군포도시공사채권관리관인
- 군포도시공사채무관리관인
- 군포도시공사지출원인
- 군포도시공사수입금출납원인
- 군포도시공사물품출납원인
- 군포도시공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
- 군포도시공사채권채무출납원인
- 군포도시공사일상경비출납원인
- 군포도시공사사장인(인감)
- 군포도시공사인사위원회인
- 군포도시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인
- 군포도시공사임원추천위원회인
- 군포도시공사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인
- 군포도시공사이사회인
- 군포도시공사이사회회장인
- 군포도시공사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인